



Unbundling Competition

# 에피소드 3: 동남아시아의 경쟁법 – 싱가포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홍콩 사무소 파트너 및 아시아 경쟁법(독점규제법)분야 책임자인 **Adelaide Luke** 및 HSF 공식 연합 싱가포르 로펌 Pro Legis의 상무이사인 **Ban Leong**이 최근 싱가포르 경쟁법의 발전에 관련하여 논의합니다.

싱가포르의 탄탄한 경제법 제도를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 경쟁 규제 기관인 경쟁 소비자 위원회(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Singapore, “CCCS”)는 지역 내 가장 활발하고 수준 높은 규제 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쟁법은 영국의 경쟁법과 많은 유사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비(非)지배적 당사자 간의 수직적 계약을 금지된 반경쟁적 계약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는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싱가포르는 자발적인 기업결합신고 제도를 갖고 있기에 매년 신고 건수가 적다는 점에서 비교적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발적 성격을 불구하고, 싱가포르 경쟁법은 “경쟁의 중대한 악화”를 초래하는 경제력 집중의 실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CCCS는 그 자체로 조사, 기소, 판결 및 그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타 규제기관에 비해 상당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CCCS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 및 신고 검토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CCCS는 특히 디지털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 완료한 싱가포르의 전자 상거래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또한 의뢰하여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데이터와 경쟁의 관계 등 현재 여러 관할구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CCCS는 동남아시아 내의 경쟁법의 이행을 위한 지역 협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타 규제기관에 교육 및 직원 파견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